

치안시책자료

제3호

목 차

■ 치안칼럼/지도위원 안경환	2
■ 집중연구	
❖ 치안정책학술세미나 발표 및 토론 요약/편집반	5
(수사구조관련내용을 중심으로)	
❖ 외국의 집단분쟁의 역사와 교훈/총경 김 윤	21
❖ 일본 경찰법개정안 해설/편집반	28
❖ 일본 폭력조직의 실태와 대책/경감 정승호	41
❖ 일본 수사경찰활동의 광역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정에 대하여/편집반	83
■ 국내외 치안동향	
❖ 지존파사건은 증오범죄인가?	94
❖ 일본 경찰청의 폭력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정	95
❖ 중국국적 선박의 「해상여관」	95
❖ 일본 법무성의 외국인 수감자 대책	96
■ 연구소 소식	97
■ 최신판례	99

치안시책자료 제3호

발행일 : 1994년 11월 21일

발행인 : 유 병 국

발행처 : 치안연구소

인쇄처 : 대한문화사

(비매품)

민주사회와 경찰의 역할

안 경 환
(서울대 법대 교수)

60년대 통계를 보면 미국의 어린 소년들이 장래의 희망으로 꿈꾸는 3대 직업이 경찰, 소방서원 그리고 우편배달부라고 했다. 이유를 물으면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으면 가장 인기없는 직종의 하나가 경찰이라고 한다. 너무나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방서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과거에 3대 인기직종중에 우편배달부만이 겨우 랭킹 10위이내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심심찮게 개에게 물리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빈도수에 있어서나 위험도에 있어서나 경찰과 소방서원의 위험에 비할 수 없다.

영국에서도 경찰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사랑을 받던 직업이다. 영국 어린아이들은 놀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경찰에게 기댄다. 중년이상의 영국인들은 어린 시절에 같은 또래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해결이 나지 않으면 경찰관 아저씨의 지혜를 빌리곤 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영국에서도 이제 경찰은 인기가 시들하다고 한다. 격무에다 봉급도 이전만 못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알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찰관직이 매력을 잃어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인 듯하다. 독재정권 아래서는 그 하수인 노릇을 해야 하니 양심적인 사람들로서는 할 일이 아니고, 민주정부 아래서는 호령하는 사람이 많아서 힘든 직업이다.

그러나 경찰만큼 중요한 국가기관은 없다. 그 많은 국가기관을 통폐합하여 하나만 남기라면 국민은 경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생활에서의 경찰은 마치 공기나 마찬가지로의 존재다. 함

께 있을 때는 그 존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나 막상 그 자리에 약간의 공백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다.

한 나라가 민주사회나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일차적인 척도가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이다.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가 아니라 지팡이인 나라라야만 민주국가의 깃발을 내걸 수 있다. 경찰에게는 엄청난 조직과 물리력이 있다. 그 엄청난 힘은 몽둥이가 될 수도 지팡이가 될 수도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수의 그릇된 국민에게는 몽둥이가 되어야 하나 여느 때는 선량한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친절한 일상의 길잡이로 머물러야 한다.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경찰 자신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을 다스리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보의 수집도 국민의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의식 전환은 경찰수뇌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상관에게는 약한 반면, 아래 사람에게는 강한 인물들이 경찰의 수뇌부를 구성하는 한 경찰의 민주화가 이루어 질 수 없다.

둘째, 경찰이 명실공히 민주경찰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사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경찰 고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성격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 검찰의 명령,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국민생활로부터 유리된 검찰이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상시 대면관계에 있는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다. 명분인즉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나 인권침해의 사례를 본다면 경찰보다 검찰의 기록이 결코 낮지 않다. 중대한 인권침해는 오히려 검찰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더욱 많다. 표면적으로 경찰의 권력남용이 문제된 경우에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배후에는 검찰이 직·간접으로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체의 경우 굵은 일은 경찰이 떠맡고 생색은 검찰이 내는 경향이 있다. 마치 전쟁에서 훈장을 타는 장군은 부하를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인 경우가 많듯이.

설령 인권침해의 사례가 경찰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에게 수사의 주도권을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화'는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부문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직접 국민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노증되어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검찰이라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유리된 소수의 권력기관이 수사의 지휘에서 공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해서는 총체적인 해결의 단서가 잡힐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경찰은 힘든 직업이다. 그러나 가장 보람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경찰을 욕되게 하는 것도, 빛나게 하는 것도 일차적으로는 경찰 자신의 몫이다. 그러나 경찰을 국민의 공복으로

만드는 것은, 적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 자신의 몫이다.

민주화를 위한 격동기를 겪어온 사람이면 누구나 데모대를 진압하는 경찰의 태도를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시민들이 데모대를 지지하는 태도가 역력할 때 진압하는 경찰이 얼마나 풀이 죽은 모습인가를, 국민의 눈이 살아 있고 정의감이 살아 있고 준법정신이 살아 있는 이상 경찰은 함부로 몽둥이를 휘두를 수가 없다.

민주사회의 경찰은 국민이 만든다. 경찰을 아끼는 국민, 국민을 존중하는 경찰, 우리 스스로 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다. 우리의 순박한 소년들의 머리속에 이웃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언제나 응석부리며 기댈 수 있는 아저씨가 바로 경찰관인 그날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모두가 조금만 참자.



판례로 본 각 자유직업별 정년

기동연한	직	업
만 27세	버스안내양	
만 35세	호스티스, 매춘부	
만 40세	다방마담, 여안마사, 프로야구선수	
만 45세	여자면도사, 화장품외판원	
만 50세	술집 「얼굴마담」, 해녀, 인삼찻집마담, 상점여종업원	
만 55세	손수레 인부, 사진사, 가수, 목수, 야쿠르트배달원, 일용노무자, 전기공, 제과공, 광원, 3등항해사, 배차원, 용접공, 중기정비업자, 직조공장종사자, 시멘트벽돌 제조업자, 미용사, 자동차기술학원 실습반장, 과자류 배달원	
만 60세	목욕탕주인, 정육점주인, 양복점주인, 이발사, 고물행상, 두부제조판매업자, 암자운영자, 철물상, 운수업자, 신문사논설위원, 양곡산매상, 건설회사기술상무, 개인회사이사, 피혁도산매업자, 재봉사	
만 65세	부동산 중개업자, 목사, 의사, 변호사, 약사, 대학강사, 간호학원강사, 포목행상	
만 69세	판소리 국악인	
만 70세	건축사	

'94 제1회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발표 및 토론 요약

(수사구조관련내용을 중심으로)

사 회 : 안 해 균(서울대 명예교수)
주제발표 : 차 용 석(한양대 법대 학장)
토 론 : 백 형 구(변 호 사)
이 영 란(숙명여대 교수)

〈目 次〉

- I. 발표주제 : 인권보장과 수사의 합리화방안
1. 머리에 붙여(문제현황과 논의의 방향)
 2. 헌법적 형사절차론의 구현
 3. 수사구조론
 - 가. 규문적 수사구조론과 탄핵적·적정절차적 구조론

- 나. 탄핵적·적정절차적 구조론에서 본 개선방안
4. 경찰의 독자수사권인부의 논의
 - 가. 비교법제적 고찰
 - 나. 전통, 이상론, 제언
5. 결 론

II. 토론 요지

I. 발표주제 :
인권보장과 수사의 합리화방안

1. 머리에 붙여(문제현황과 논의의 방향)

(1) 수사는 형벌권발동과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적나라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므

로 개인의 인권과 예리한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 범인확보와 증거수집이라는 수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밀행성, 강제성, 기동성, 탄력성, 신속성을 띠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개인의 신체, 자유, 비밀, 명예, 재산 등에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

66

권력분립과 권력의 억제장치의 보장은 헌법적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의 분권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기관이 그것을 독점하고 있는데다가 공소권·불기소처분권도 독점 행사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른바 검찰 팹쇼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99

(2) 이상과 같은 수사의 특성에서 수사권의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권력발동의 어느 영역에서보다 개인의 인권보장의 필요성이 절감된다. 이 때문에 헌법은 미국헌법의 영향을 받아 많은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헌법상의 보장을 여기에 빼와 살을 붙여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형사절차법은 규범논리적 구조로 보아 헌법의 하위법규라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에 관련된 헌법의 제 규정 및 그 뒤에 있는 헌법정신을 반영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적 형사절차론, 형사절차의 헌법화 이론 또는 헌법합치성이론).

(3) 현행수사형태는 제도면에서나 운영면에 있어서 일제시대의 잔재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시대의 형사사법은 검찰관료가 그 휘하에 수사관·경찰·헌병 등을 두고 형사사법을 기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장악하였다.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치적·사회적 운동을 억압하였다. 신체구속을 비롯한 각종의 강제처분은 검사의 전횡에 속하였고 사법관료는 rubber stamper처럼 형식화되었다.

일본에서는 전후 점령군총사령부에 의하여 형소법수정의견과 재판소 구성법개정 제안이 나왔었다. 이것은 일본의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에게 큰 충격을 주어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그 결과 검찰권의 지역적 분권화, 검사의 공선제도 및 기소배심제도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의 분화와 검찰심사회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4) 한국에서는 1948년의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형사소송법개정'(군정법령 제176호)을 제정·시행하면서 종래의 지나친 인권침해부분을 개정하여 수사절차를 상당한 정도로 인권보장 방향으로 부분적 개혁을 가하였으나 검찰·경찰의 기구나 기능을 제도적으로 민

“

본고에서는 헌법론적 형사절차론에 근거하여 주로 수사 구조론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평을 가하고 이에 따라 수사상의 문제상황과 개혁 방안들을 논하려 한다.

”

주화·자유화 방향으로 개혁하지는 못하였다.

부분적으로는 군정법령 176호 아래에서의 수사절차 보다 후퇴한 영역도 잔재하고 있다. 권력분립과 권력의 억제장치의 보장은 헌법적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의 분권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기관이 그것을 독점하고 있는데다가 공소권·불기소처분권도 독점 행사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른바 검찰팻쇼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과거의 전체주의적 통치시대에는 그러한 독점된 수사권·공소권이 정치권력의 검찰 인사권장악과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족화를 통하여 정치권력자의 자의에 따랐다는 느낌을 불식할 수 없었다.

(5)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고 반드시 패망한다는 ‘액톤’의 말은 역사적 사실로서 경험하였다. 이것을 산 교훈으로 삼아 절대권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조속히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의 형소법의 모체라고 하는 대륙의 여러 나라(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일정한 범위에 걸쳐 수사권은 분권화되어 있고, 특히 영미법영역에서는 수사는 원칙으로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어떤 사회의 문명수준의 척도는 인권보장상황이라고 하겠고 이것은 곧 형사사법, 특히 수사절차의 운영상황에 의존한다고 하겠다. 수사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상황은 헌법적 기준의 법의 적정절차에 걸맞는 권력발동의 정당한 한계가 준수되어야 하고 가능한 최대의 수사권억제 장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 방향으로서의 구체적인 개선의 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수사권의 적정한 분배와 억제·조절의 장치, 정치적 사건에 대한 평등·공정한 수사권의 발동장치, 수사조건의 엄격화, 수사에 있어서의 무죄추정의 법리 및 기타의 법의 적정절차의 보장, 즉 임의수사의 원칙의 준수, 불구속수사원칙의 사실상의 실현, 수사상의 구속기간의 단축 등이 있으며 검찰권과 관계되는 개혁요청은 다음과 같다.

- ① 검찰권의 지방분권화
- ②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및 임기후의 공직취임의 제한
- ③ 검찰권 중앙집권제의 완화와 개개검사의 독자성 보장

- ④ 준기소제도의 확대·개선
- ⑤ 특별검사제도의 채택
- ⑥ 사인소추제도의 채용

(6) 현재 사법제도의 개선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개정시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왕에 개혁을 시도하려면 형사사법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검토한 뒤에 필요성과 이상론의 조화를 기한 개정안이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헌법론적 형사절차론에 근거하여 주로 수사구조론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평을 가하고 이에 따라 수사상의 문제상황과 개혁 방안들을 논하려 한다.

2. 헌법적 형사절차론의 구현

형사사법절차는 국가의 형벌권발동에 관한 절차이므로 국가의 권력발동의 기본원칙을 정한 헌법의 제원칙을 실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절차에 관한 법규와 이론은 헌법론을 출발점으로 하여 헌법에서 예정된 인권보장의 정신과 법의 적정절차의 제규정의 내용과 의미면에 있는 헌법정신을 실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헌법적 형사소송이론은 형사절차의 기능과 구조에 이론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지도방향을 제시한다. 그에 따른 법의 적정절차의 원리와 당사자주의 구조는 수사구조를 이론화하고 수사의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현행의 수사구조나 수사방법은 반드시 헌법이념에 충실하지는 않더라도 헌법정책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입법론을 전개하면 되는 것이다.

3. 수사구조론

가. 규문적 수사구조론과 탄핵적·적정절차적 구조론

(1) 수사를 전형사절차와 관련시켜 어떻게 파악하며 또 수사절차, 특히 강제처분권을 둘러싸고 법관, 검찰관, 피의자 등의 상호관계를 원칙적으로 어떻게 규정지워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의 대립이 수사구조론으로 표출되고 있다. 수사구조론에 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 대하여 고찰컨데 공판에서 법관, 검찰관, 피고인이 삼각관계에서 대등한 양당사자의 대립항쟁속에서 법원이 심판을 행하는 것처럼 수사단계, 특히 강제수사에서도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이 대립하여 각자가 독자적으로 소송준비를 하면서 강제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삼각관계를 이루어 법원의 강제조치가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 당사자주의적 구조를 취한다고 보는 이론이 탄핵적 수사구조론 또는 법의 적정절차모델이라고 한다.

(3) 이에 반하여 검사, 경찰 등의 수사기관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상하관계를 이루는 일면적 관계로 보고 수사권에는 피의자를 취조의 객체로 보아 피의자신문은 물론이고 강제처분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규문적 수사구조론이다. 다만 검사가 강제

“

우리의 법영역에서 형소법처럼 ‘law in books’와 ‘law in action’이 다른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그 실천은 전통적인 일제시대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몇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 본 탄핵적·적정절차적 구조론에 되도록이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려 한다.

”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관이 영장발부를 통하여 수사에 개입할 뿐인 것으로 본다.

나. 탄핵적·적정절차적 구조론에서 본 개선방안

현행형소법상의 많은 제도는 헌법상의 권리장전 조항들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적정절차구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풀이되지만 운영실태에 따라서는 규문주의적 구조론에 따라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하겠다. 우리의 법영역에서 형소법처럼 ‘law in books’와 ‘law in action’이 다른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그 실천은 전통적인 일제시대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몇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 본 탄핵적·적정절차적 구조론에 되도록이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려 한다.

(1) 장기간의 구속수사는 규문적 수사관의 반영이라고 하겠으므로 구속수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헌법론적·탄핵적 수사구조에서는 영미에서처럼 구속 즉시 피의자를 법관앞에 대동하여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심사받게 하고 각종의 권리를 고지받게 하며 이 단계에서 보석도 허용되게 함이 바람직하다.

(3) 구속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적정절차구조론과는 거리가 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의 ‘형사피고인’에 피의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제도를 마련함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4) 탄핵적 수사구조론에서는 법관의 영장은 발부시와 집행시간에 사정 변경이 있을 수

“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어느 정도 인정함으로써 검찰과 경찰간에 수사권의 분권화를 기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 분립 및 권력의 상호 견제의 정신에 합치될 것이다.

”

있으므로 집행할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조건 부명령장이라고 보고 있다.

개정형소법시안에는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법관앞에 인치하여 체포·구속의 실질심사를 받게 한 것은 영장의 법관의 명령장적 성질을 강하게 띠우며 동시에 강제처분권이 법관에게 있다는 것을 종전보다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5) 현재 수사기록 등에 의존하는 조서재판을 지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어느 정도 인정함으로써 검찰과 경찰간에 수사권의 분권화를 기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및 권력의 상호 견제의 정신에 합치될 것이다. 현재의 수사과정의 중복장치는 수사를 보다 철저하게 하여 범인필벌을 기하려는 규문주의적 수사구조론에 합치하는 것이다. 수사‘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된다. 특히 체포제도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법관앞에 피체포자를 인치하여 체포의 당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

체를 직접 체포한 자가 법관앞에 피의자를 대동하여 체포·구속을 해명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검사가 직접 인지한 사건이외에는 영장발부과정이 모두 전문증거(경찰의 수사서류)에 의하여 처리된다.

개정형소법시안이 체포·구속의 실질심사를 인정하면서 경찰의 역할을 완전히 소외시킨 것은 본래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영장신청권이 검사에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영장신청권자의 명의를 형식화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실질적으로 신청권을 행사케 하고 또한 실질심사에 사법경찰관이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을지, 연구해 볼만한 과제이다.

(7) ① 현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형사소송법개정시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다.

② 체포제도의 신설의 입법취지는 피의자의 신체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데 있

“

오늘날에는 대륙에서도 범죄의 다양성, 광역성, 기동성에 대응하여 수사의 기술이나 전략 그리고 경험 등에 있어서 우수한 경찰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여 어느 정도 독립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다고 하겠다. 즉 조금 더 가벼운 조건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뒤에 48시간 동안 억류해 두고 그 동안 신문을 통하여 구속의 요건을 보강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데 있다. 피의자의 신체유치를 신문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통상구속에서 실질심사를 위하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판사의 실질심사를 받게 한다고 하지만 구인도 구속의 일종으로서 구속요건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구속과의 차이는 단시간의 신체유치일 뿐이다.

검사측에서는 체포제도를 두고 있으나 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영장신청, 그리고 구속영장신청이란 번잡한 이중절차를 취하지 않고 현행 통상구속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임의동행’의 관행은 그대로 존속될 것이다.

③ 현행구속제도를 혁신하려면 체포전치주의를 취하여 현행 통상구속, 긴급구속 대신에 ‘체포’, ‘긴급체포’로 규정하고 현행범체포와 함께 피의자를 체포한 뒤에 즉시 내지 24

시간 이내에 판사앞에 대동하여 체포의 당부와 구속의 당부를 심사받고 판사의 구금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수사상의 유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4. 경찰의 독자수사권인부의 논의

가. 비교법제적 고찰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수사에 있어서 그 주재자로서의 검사를 보좌,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수사에 있어서는 독자적 수사권을 갖지 못하고 일일이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상명하복관계에서 수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모형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륙에서도 범죄의 다양성, 광역성, 기동성에 대응하여 수사활동도 전국적으로 기동성있게 강력하고 물리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경제적인 능률성 뿐만 아니라 수사의 기술이나 전략 그리고 경험 등에 있어서 우수한 경찰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여 어느 정도 독립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66

현행 수사체계를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법적 복지의 정도도 높여야 할 것이며 수사도 문명국수준으로 이끌어 올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99

명하복관계로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성이 약하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며 또 정치권력이나 정실에 좌우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그에게 독립수사권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체가 완전히 실시되고 경찰의 위상의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극히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중립기관으로서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결과를 놓고 현존 수사기관들이 집단적 이기심을 버리고 진지한 자세로 새로운 수사체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현재의 경찰위상이나 제도적 여건 아래서는 완전한 독립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정형을 기준하여 일정한 형벌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라든가, 성질에 따른 범죄를 특정하여 이러한 범죄의 수사는 경찰에게 독립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찰의 위법·불법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송제기시에 견제·교정할 수도 있다. 물론 검찰에게는 일반적 지시권이나 일반적 지휘권

을 부여하여 수사와 소송제기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또 하나의 방향은 체포전치주의를 제도화하여 체포영장청구권을 사법경찰에 부여하고 영장발부를 받은 뒤에는 체포한 경찰이 법관에게 피의자를 즉시로 대동하여 체포의 당부를 심사받은 뒤에 24시간 내지 48시간까지 피의사건의 조사는 경찰에게 맡기고, 그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찰에 송치하고 구속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게 구속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이 경우에도 영장발부의 실질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부터의 수사는 완전히 검찰이 직접 하거나 사법경찰에게 명하여 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사건에 대하여 직접 수사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경찰에게 부분적이거나 독립수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야 할 몇가지 조건의 보장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① 경찰의 부패를 막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② 경찰로 하여금 진실로 국민의 봉사기관

으로 되게 하는 자세의 전환

③ 경찰의 위법·불법수사에 대한 철저한 억제·규제장치의 제도화

④ 수사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의 거의 절대적인 보장

⑤ 수사과정에서의 보석권 보장 등이다.

● 지금의 현행 수사체계를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법적 복지의 정도도 높여야 할 것이며 수사도 문명국수준으로 이끌어 올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II. 토론 요약

● 사회 안해균 :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과 법에 대한 개념들은 민주화,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 차용석교수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합리화 방안'은 최근의 큰 변화를 전제로 한 대단한 발표였다고 생각한다. 동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겠다.

토론 이영란 : 차교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겠다.

차교수의 논문중에는 간혹 개념의 형식논리에 관한 생소한 부분이 보인다. 예컨대 사법경찰관리가 수집한 체포영장 신청자료는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형사소송법 이론에서 통용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영장신청권자의 명의를 형식화하고 경찰이 실질적으로 신청권을 행사케 하여 형식과 실질

을 분리하지는 것은 기왕의 형식화한 명의로 실질화하고 있는 입법추세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체포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체포제도의 도입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체포제도의 예측에 대해서 검사는 통상구속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것이고 따라서 임의동행 관행이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체포장제도는 더욱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독자수사권인부론에서 생소한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법률지식은 치밀한 이론을 갖출 필요는 없고 수사활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면 족하더라도 한 부분이다. 치밀한 이론은 물론 검찰의 소추와 기소에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수사도 법에 의한 수사여야 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수사할 정도의 법률지식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경찰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비리와 부조리에 연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지 못하면 검찰은 법의 정비를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할 것이고 경찰은 영원히 수사의 보조기관으로 남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의 독자수사권 부여는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법을 잘 알고 잘 지키게 하는 것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근무여건개선은 1980년대 이후의

다.

영국, 미국 및 일본의 형사절차가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 전통, 이상론, 제언

(1) 검찰의 수사의 주재권을 인정하려는 논리적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주장되고 있다. 첫째, 수사절차는 철저히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된 검사가 그것을 주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경찰은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또 본래의 업무가 보안, 행정경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으며 신분에 있어서도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관과 거의 대등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주재토록 하는 것이 정치적 영향이나 정실에 좌우될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셋째, 경찰은 지난날의 경찰국가의 후신인데다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 온 전철에 비추어 국민으로 부터의 신뢰성이 희박하므로 사법에 밀접한 수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근거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첫째 근거에 관해서는 수사가 법적으로 넓게 규제받지 않았던 지난날의 국가권위주의시대에도 검사가 수사의 전담권을 가졌다는 것과 반드시 조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 처럼 수사절차가 엄격히 '법의 적정절차'의 보장아래 있는 곳에서도 경찰의

수사독립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설득력있는 논거는 아니다. 수사 단계에서 법률지식은 그렇게 치밀한 이론을 갖출 필요가 없고 수사활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다. 치밀한 법률적용은 공소제기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맡기면 되고 또 위의 공판정에서 법관의 소송지휘아래,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변호인의 법적투쟁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법적지식의 부족이라는 이유는 그의 수사의 독자성 인정에 장애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근거에 관해서는 첫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신분상의 독립성이 확고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검찰활동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것은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수의 경찰을 중앙에서 통제하기 보다는 소수의 검사에 대한 통제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정치적 영향을 검사측이 더 받기 쉬울지 모른다.

셋째 근거는 상당한 이유를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성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책과 동시에 수사권의 폭을 제한해 두면 큰 장애는 없어질 것이다. 경찰로 하여금 권력의 시너 역할을 하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추락케 한 것은 바로 정치권력이고 또한 제도적 미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의 신뢰

를 상실한 것이 어디 경찰뿐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는다. 공직자 일반의 윤리적 평가가 추락한 곳에 유독 경찰만이 독립수사를 못할 만큼 타락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 지경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한편으로는 사법경찰을 행정경찰로 부터 분리시켜 엄격한 선발절차와 철저한 훈련을 통해 수사 적격자로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그에게 독립수사권을 부인하려는 논거를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모든 영역에서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권력분립과 지방분권의 원리가 제도 와 그 운영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상적으로 그려 볼 때에는 수사권도 분립 되고 관장기관 상호간에 견제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정치적 권력이 아무 억제장치가 없다고 할만한 검찰 권을 통하여 실현, 보장돼 온 풍토에서는 검찰의 수사전권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 검사의 수사, 공소제기, 유죄로의 공판 정에서의 활동 등 재판이외의 모든 활동을 일선에 갖게 되면 그 업무량의 과중함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수족으로 활동하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교정할 수도 없다. 또한 경찰의 비행이나 수사권남용은 곧 검사 자신의 지휘아래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자기교정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찰의 위법, 불법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도 그에게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견제하려는 관점에서 적정

절차를 보장토록 하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검찰과 경찰은 수사 활동에서 유착, 밀착할 것이 아니라 상호독립성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사활동의 성질에서 볼 때에도 그것이 사실적, 기술적, 합목적적, 전문적, 기동적인 요소를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 이것은 경찰의 본래적 성격에 적합하다.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적법·부적법의 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법작용과는 다르다. 수사의 능률성의 확보라는 점에서도 인적, 물적, 조직면에서 우수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찰에 독자수사권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현실적인 수사관행은 대개 경찰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젠 더 이상 경찰로 하여금 검사의 '뻔한 팔'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독자수사기관으로 존중하고 자존심도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현재상황에서는 검찰과 경찰간에 조화있게 수사권을 분배하되 수사와 공소제기에 있어서의 사건간의 균형과 통일을 위하여 검사의 일반적 지휘권은 인정함이 바람직하다.

5. 결 론

우리의 수사체제는 전형적인 대륙법계통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헌법은 바뀌고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도 수사권체계는 구체제와 조금도 다름없이 검찰이라는 단일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상

경찰의 민주화, 중립화 요구와 더불어 꾸준히 주장되어 왔는데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인가? 1985년에 출간된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최소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와 직무 수행상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근무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백형구 : 저는 오늘의 토론이 제3자적 입장에서 학자의 순수한 견해임을 미리 밝혀 두고 싶다. 오늘날 수사에 있어서의 인권 보장은 법철학이다. 특히 형사법학자들에게서는 제1차적이고 가장 지고한 이념이 되었다. 수사의 제1차적 목적은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하지 말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범인의 인권보장만 고려하고 있고 다른 수사의 목적달성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 시정되어야 할 풍조다. 또 하나 인권보장의 대상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 범인의 인권보장만 중요시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범죄와의 전쟁에서 박봉에 허덕이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토론을 하겠다.

현재의 핫이슈는 체포제도이다. 체포제도 개선의 의미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제도와 경찰서의 보호실제도를 합법화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평소 주장하던 이야기이다. 사전영장청구시 영장대기 피의자를 경찰서에 강제로 유치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다. 과거에는 영장청구된 불구속상태의 피의자를

보호실에 일시적으로 억류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를 불법구속이라 한 이후에 법적으로 강제로 유치할 방법이 없다. 현재 관행적으로 불심검문에 걸린 기소중지자를 체포하여 강제연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근거가 없다.

개정법률안의 체포영장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 철원경찰서와 의정부지원, 서천경찰서와 홍성지원 등 경찰서와 법원의 거리가 먼 곳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때 피의자를 대기시킬 근거도 없으며 피의자를 대신키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미리 청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초동수사단계에서 경찰에게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가장 인권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제도를 두고 있다. 체포 후에 판사 앞에 가서 심사를 받는다. 이것이 영장실질심사제도이며 인신보호영장제도이다. 경찰을 두는 이유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며 공공의 치안 질서유지를 위해서이다. 결론적으로 영장에 대한 체포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을 개정하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제도를 인정하고 경찰서 보호실을 합법화하여야 한다.

둘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란 구속영장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하여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이론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앞에서

의 예처럼 경찰서와 법원간의 거리가 대단히 멀고 경찰의 수사인력 또한 부족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전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불구속상태이므로 법원까지 강제연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한 형소법제도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인권보장이 좋지만 초동수사단계에서 범인의 신병확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정의에 배치된다. 이론적으로 영장실질 심사제도에 대하여 찬성이며 언젠가는 영장실질 심사제도를 채택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현실상 시기상조이다.

셋째, 수사관행상의 철야신문은 금지되어야 한다. 수면권의 침해는 고문, 가혹행위로서 형법 125조 독직가혹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백은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철야신문관행은 영장에 의한 체포제도가 없는 관계로 임의동행 후 48시간내에 결말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체포영장제도를 뒤편으로서 이러한 잘못된 수사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조직의 개편에 대하여 토론한다. 우리나라에 사법경찰관이란 말이 있다. 법원의 집달리가 집달관으로 바뀐 지 오래다. 사실상 수사의 대부분을 순경, 경장, 경사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책임이 있는 만큼 권한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일본은 49년부터 사법경

찰직원인 사법순사에게도 수사상 일체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프랑스식 용어로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경찰에 반대되는 개념이 사법경찰인데 경찰은 수사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경찰이라고 해야 한다. 현재까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란 이론으로 사법경찰리에게 수사의 권한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사법경찰관을 수사경찰관으로 용어를 바꾸고 현재의 사법경찰리에게도 수사의 주체적 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위이상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보조기관이나 수사의 주체나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현행법상 검사와는 별도로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수사의 주체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가 상명하복관계라 하여 수사의 보조기관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인지에서부터 임의수사 강제수사 등 모든 부분에서 독자적인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에 관해서는 수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미흡하며 여러가지 경찰의 현실을 직시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아직은 국민들의 공감대형성이 힘들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인식이 안되어 있는 것이다. 경찰수사권 독립이란 검사의 수사지휘권배제와 판사에 대한 영장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유명무실화 된 상태에서

“

결론적으로 경찰이 나아갈 길은 정치적 중립과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획득이다. 경찰수사도 검찰수사도 안믿어 주는 현실에서 경찰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와 철저한 인권의식을 가진 수사경찰관의 변화된 자세가 필요하다.

”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일은 거의 없다. 형소법 제196조 제1항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였는데 나는 이것을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할 수 있다라고 보정해석하고 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권 독립을 논하기에는 높은 구속영장기각율 등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나아갈 길은 정치적 중립과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획득이다. 경찰수사도 검찰수사도 안믿어 주는 현실에서 경찰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와 철저한 인권의식을 가진 수사경찰관의 변화된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여야 한다. 지존과사건시 차량압수를 안한 것 등 여러가지 비판을 하였지만 많은 고생을 하고 지략으로써 아무런 사고없이 일당을 체포한 것을 칭찬해 주어야 한다. 온보현

사건시 범죄에 이용한 택시가 검문검색을 한번도 안당했다고 경찰을 비난하였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검문검색을 철저히 할 때 이야말로 인권유린이며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아야 한다. 국민들은 경찰을 비난하기 전에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고생하고 있는 경찰을 고마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어야 한다.

과거에 경찰이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비난을 받았었지만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진정한 민주경찰이 되어 주길 바란다.

사회 안해균 : 밤새도록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일본의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것은 학자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입법기관 등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앞장서서 활동해 주기 바란다.

발표 차용석 : 토론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 첫째, 경찰의 책임에 대한 문제에서 최근의 엽기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경찰에 대한 비

난중에는 검사가 받아야 하는 부분도 많다. 예방측면의 소홀이 있을 때는 경찰이 책임을 지고 수사측면에서 차질이 있으면 검사가 먼저 책임을 지고 경찰이 부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을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백형구 변호사가 말한 경찰의 영장없는 체포권한 인정문제는 외국에서도 중죄사건에 대하여 체포영장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체포의 권한을 인정하는 곳도 많다. 다만 이때 사법경찰관이 체포를 하되 즉시, 또는 24시간내에 판사앞에 피의자를 데리고 가서 구속에 대한 당부심사를 받고 보석이 그 자리에서 일단 허용된다. 이와 같이 영미법은 구속원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구속원칙과는 제도적으로 다르다. 만약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없이 경찰관이 체포의 권한만을 갖게 된다면 체포된 자가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보장 및 무죄추정의 법리에 위배된다. 수사단계에서의 범인은 주관적 판단일 뿐이며 확정판결을 통하여 범인여부가 밝혀지는 것이므로 수사단계에서의 범인에 대한 국민감정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이론에 도입해서는 안된다. 요즘 소송법학자가 인권보장하자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자를 불벌하자는 이야기이다. 피해자의 욕구대로 형벌권이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며 피해자의 인권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인권으로 가정해서는 안된다.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범죄피해보상과 발언권의 보장,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실체와 절차를 혼돈해서는 안된다.

수사경찰관의 법률지식에 대해서 이교수는 수사에도 법의 적정절차를 보장해야 하니까 법률지식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강력범죄와 같은 단순사건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법률지식은 큰 차이가 없으며 치밀한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공소제기나 재판과정에서는 검사가 담당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좀 단순한 것, 정치적으로 관계없는 것 등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치밀한 법률지식이 필요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이 갖추어야 할 수사상 필요한 법률지식은 독자수사권을 개별적으로 어떤 측정한 범죄에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백변호사가 말한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수사를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사법경찰관은 상당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 독자수사권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리 좋은 태도는 아니다. 법적조치를 무시하고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현실론의 혼돈은 곤란하며 이런것 보다는 명확하게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사법경찰리라는 것은 용어상의 문제로서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업무상 관계를 토대로 양자간의용어를 구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66

국민을 바보시하고 절대권력자 혼자만이 모든 것을 독점 하겠다는 사고가 수사권의 문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의 독자수사권 문제를 좀더 검토하여 경찰과 검찰이 양립할 수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99

지 좀 더 치밀하게 연구검토해서 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백변호사가 경찰은 신뢰성이 없어서 독립수사권은 시기상조라 하였지만 이 문제는 동시에 병행해서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6.25전에 실시했다가 중앙집권체제 옹호자에 의하여 자치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40년간 보류된 것과 같이 국민을 바보시하고 절대권력자 혼자만이 모든 것을 독점하겠다는 사고가 수사권의 문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의 독자수사권 문

제를 좀더 검토하여 경찰과 검찰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 안해균 : 사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연간 120만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고 그 범죄 중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1000여명의 검사가 120만건의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률적 문제, 인권문제와 앞으로 범죄가 계속 늘어 난다고 전제를 할 때 경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앞으로 더욱 연구할 과제라 생각한다.

관리자의 잘못된 업무지시

- 오리무중형 : 구체적인 방침이 없는 막연한 지시
- 앵무새형 : 단순히 전달하는 지시
- 천편일률형 : 누구에나 똑같은 획일적인 지시
- 조령모개형 : 방침을 수시로 바꾸는 일관성 없는 지시